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태수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9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12월 21일

발 의 자 : 김태수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송아량, 송명화, 오현정, 이정인,
채유미, 이은주, 김경영, 이세열,
최웅식, 문장길, 김상훈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-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, 격리조치의 근거, 출입금지 장소를 신설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,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맹견의 정의를 신설하고,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함(제2조제2호의2 및 제7조의2 신설).
- 나. 시장의 의무를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유실·유기동물의 입양을 위해 노력하도록 확대함. (제3조제1항)
- 다.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신설함. (제7조의3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“맹견”이란 도사견, 핏불테리어,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동물복지”를 “동물복지, 유실·유기동물의 입양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단서 중 “구청장이”를 “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구청장이”로 한다.

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맹견의 관리) 시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7조의3(맹견의 출입금지 등)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2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
4.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3. ~ 9. (생략)</p> <p>제3조(시장의 의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, <u>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6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)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·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<u>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(이하 "등록대행자"라 한다)가 있는 경우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의2. "맹견"이란 도사견, 핏블테리어,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.</u></p> <p>3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시장의 의무) ① ----- ----- ----- <u>동물복지, 유실·유기동물의 입양을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구청장이</u> ----- -----</p>

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,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.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2(맹견의 관리) 시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7조의3(맹견의 출입금지 등)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2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
4.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8조제1항

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